



- 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  - 가. 전자금융감독규정
  - 나.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
  - 다.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

## 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\*

### 가.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(2016/10/5개정·시행<sup>1)</sup>)

#### 1) 목적

- 클라우드 등 새로운 IT 기술 확산 및 핀테크 산업 발전 등 변화된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밖의 일부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고객정보 처리시스템을 제외한 전산시스템 중 일부를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
  - 지정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 분리 등 클라우드 활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 적용 제외(14조의2)
- 전용회선을 사용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 허용 등 기존과 동등한 수준의 새로운 보안 기술 적용을 허용(15조, 60조)
-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카드정보저장 전자금융업자의 책임보험가입 기준 금액 등을 10억원으로 상향조정(5조)
-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적립하는 준비금의 관리·지급 관련 절차 마련을 의무화(5조)

\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5조1항6호 및 5조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8조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허가, 등록 또는 인가를 마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도 적용



- 대규모 고정자산을 보유한 겸업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온 현행 안전자산 보유 기준을 변경
  - (기존) '총자산 대비 10%의 안전자산 보유'
  - (개정) '총자산 대비 10%의 안전자산 보유' 또는 '미정산 잔액 대비 100%의 안전자산 보유'로 개선(63조)
  
- 금융권 통합 보안관제센터 운영 등 금융권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역할 명확화(37조의4)

## 나.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(2016/10/11개정·시행)

### 1) 목적

- '기업활력을 제고하는 기업공시 및 회계제도 개선방안'('16.5.9일 발표)에 따른 후속조치로 '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'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감사인 지정시기를 단축(10조8항)
  - 감사인 자유선임(통상 4월말) 후, 지정감사(통상 6월초)로 인해 감사인이 중도 교체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,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지정기준일을 4월초로 변경
  
- 상장예정법인 등에 대한 복수감사인 지정(10조7항 및 13조3항)
  - 지정감사에 따른 감사보수 상승과 상장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지정대상 중 상장예정기업, 자율지정신청회사에 한하여 복수감사인을 지정
    - 단, 복수지정 감사인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감사품질저하를 방지하도록 계약 미체결 감사인에 대하여는 감사인 지정점수 복원
  
- 전기(前期) 자유수임 감사인의 지정감사인 지정 배제(13조3항)
  -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전기(前期) 자유수임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으로 지명되지 않도록 함



## 다.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(2016/10/19개정·시행)

### 1) 목적

- ‘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’로 지정된 회사가 중기 IB업무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기 위함
  -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선정과정 및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    - 「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6개사 지정」(‘16.4.15.)의 후속조치

#### 〈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〉

‘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’란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에 특화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(경영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외)를 의미하며, 2016년 4월 15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6개사를 지정(IBK투자증권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KB투자증권, 코리아에셋투자증권, 키움증권)

### 2) 주요 내용

-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취소 시 지정 절차 세분화(9조)
  -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정이 취소된 경우, 가장 최근 평가결과에서 차 순위 평가점수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를 추가 지정하도록 함
    - 지정 후 1년 이후에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공고 및 재평가를 통해 기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자 중에서 새로이 지정토록 하기 위함
-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취소사유 확대(12조)
  -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 후, 합병 등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(자기자본 3조원 이상을 갖춘 자 포함)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추가
-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평가기준 합리화(별표)



- 중소·벤처기업의 IPO, 유상증자 및 채권발행 실적 평가 시 주관회사 실적 외 단순인수 및 모집·주선 등의 실적 포함 근거 마련
- 비상장·코넥스 중소·벤처기업 유상증자 및 중소·벤처기업 M&A 자문 실적 점수를 하향조정(각 10점 → 각 5점)
  -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 및 실적 점수를 추가(각 5점)
- 상장 중소·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벤처캐피탈 펀드 등의 출자를 통한 투자는 실적으로 인정
- 펀드 운용실적에 벤처캐피탈 펀드 및 PEF의 지분 등에 투자하는 펀드(세컨더리 펀드)의 운용실적을 포함
- 정성평가 항목 중 '시장참여 의지'를 '중기특화 업무 수행 역량 및 전략'으로 구체화하고 평가지표를 세분화
  - 중소·벤처기업 업무 관련 역량(15), 중기특화 업무 수행을 위한 차별화된 제안(10), 고객(기업) 발굴 방안(10), 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방안(10), 중소·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업무 특화 전략(5)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



## 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
- 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
- 다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
## 2. 한국거래소 규정\*

###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(2016/10/5개정·시행<sup>1)</sup>)

#### 1) 목적

- 회사채 가격이 신용사건 발생 등에 따라 과도하게 변동하여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 시장에 투자자보호 장치를 도입하기 위함
  - 최근 증가 추세인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의 장내 채권시장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결제회원의 신탁업 채무 증권 결제분을 결제회원 신탁업자 계좌로 직접 대체할 수 있도록 위탁매매에 따른 결제내역중 위탁매매의 수량 외에 신탁매매에 따른 수량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채권시장에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 도입(26조, 106조의3)
  - 상장채권 발행기업의 공시사항 중 채권자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,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예고함
    -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란 회생절차 신청, 기한이익의 상실, 사채권자집회 소집·결의 등을 의미함
  - 투자유의종목 지정예고 후 채권가격이 이상급등 할 경우, '투자유의채권종목'으로 지정하여 지정일 당일 매매거래를 정지 조치
- 증권사 신탁의 채권시장 결제 편의성 제고(75조)
  - 증권사 신탁계정에서 장내 채권을 매매할 경우, 고유계정 및 일반 위탁계정과 별도로 결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\*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이 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함



- 장내 채권매매를 위해 신탁계좌에서 증권사 일반계좌로 대체하는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결제업무의 편의성 도모

## 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(2016/10/5개정·2016/10/10시행<sup>2)</sup>)

### 1) 목적

- 비개발·위탁관리리츠 및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에 대한 경영성과 요건을 완화하고 경영성과 요건 적용의 명확성 및 실효성 제고를 통해 저위험 리츠의 상장활성화를 시키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비개발·위탁관리리츠의 진입요건 완화(127조2항6호)
  - 비개발·위탁관리리츠는 부동산펀드와 유사한 수익구조를 보이고 투자위험이 낮아 매출액 기준을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추가 완화
    - '15년 3비개발·위탁관리리츠 매출분포: 100억 이상 23사(32%), 70억 이상 33사(45%)

#### 〈리츠(REITs)〉

- 리츠(REITs)는 일반인의 부동산 간접투자기회 제공 및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01년 4월 7일 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도입
- 2015년 12월 기준, 123개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있으며 자산규모는 18.2조원임
- 비개발·위탁관리리츠는 부동산 투자나 운용 결정을 별도의 자산관리 회사에 맡기면서 주로 임대사업을 하는 리츠이며,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는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(뉴스테이) 정책과 연계된 리츠임

<sup>2)</sup>상장요건의 변경에 관한 127조2항6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하고, 129조1항11호 및 130조1항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해당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부터 적용



□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경영성과요건 완화(127조2항6호)

-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매출액 요건을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
  - New Stay 연계형 개발리츠는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(국토부 고시)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되고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의 심사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자 또는 주택도시보증 지원을 받는 개발형 리츠임

□ 경영성과요건 적용의 명확성 제고(127조2항6호)

- 경영성과 요건(매출액 및 이익액)의 최근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년 기준 적용을 명문화
  - '15년 결산기준 전체리츠 125사 중 88사(70.4%)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임

□ 경영성과요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장관리 개선(129조1항11호, 130조1항13호)

- 개발형(매출액 300억원) 보다 낮은 상장요건으로 상장한 비개발형(매출액 100억원) 리츠가 개발형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개발투자비율을 상향(30% 초과)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
- 관리종목으로 지정 후 1년 이내 사유 미해소시에는 상장폐지
  - '15년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해 개발전문 리츠를 폐지하고,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결정 가능하도록 허용

□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 등록제 신설 반영(127조2항1호)

- 위탁관리 또는 구조조정 리츠 중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가 대신 등록을 허용('16.7.20 시행)함에 따라 관련 개정내용 반영
  - 위탁관리리츠의 경우 국민연금 등이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주식의 30% 이상을 취득(구조조정리츠의 경우 법상 구조조정 대상 자산으로 총자산의 70% 이상 구성)하고,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30%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(부동산투자회사법 9조의2)



## 다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(2016/10/10개정·시행)

### 1) 목적

- 저위험 리츠의 상장활성화를 위해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에 대한 경영성과요건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신설된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사유와 관련한 적용시기를 명확히 정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경영성과요건 적용기준 마련(103조의2)
  -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경영성과요건을 ① 국토교통부의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되거나, 또는 ②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전심사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금의 출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는 경우로 한정
- 경영성과요건 관련 관리종목 지정·해제시기 명확화(별표 7)
  - 비개발형으로 상장된 리츠가 개발형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개발투자비율을 상향(30% 초과)하는 경우에 관련 관리종목 지정·해제시기를 해당 사실·사유 확인일의 다음날로 명확화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



3. 금융투자협회 규정	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	다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
나.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	라. 신용거래약관

### 3. 금융투자협회 규정\*

####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(2016/10/7개정·2016/10/11시행)

##### 1) 목적

- 기획재정부에서 장기·안정적 재정 조달기능제고를 위해 50년물 국고채 발행을 추진함에 따라 채권시장 정보제공 등을 위해 국고채권 50년물 수익률을 공시하기 위함

##### 2) 주요 내용

- 50조(수익률공시대상채권) 1호에 국고채권 50년물 추가 및 20년물, 30년물의 잔존기간 변경
  - ‘15년 발행분부터 20년, 30년 만기 국고채의 통합발행주기를 1년으로 단축(기재부, ‘14.12.29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권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)
  - 국고채권 50년물의 잔존기간은 최대 통합발행주기 3년(국채법 7조1항)의 기간으로 정하되, 향후 기획재정부에서 국고채권 50년물 발행 정례화시 재조정 가능
  
- 51조(최종호가수익률의발표등) 2항 1호에 국고채권 50년물 추가 및 20년물, 30년물의 잔존기간 변경
  
- 시가평가기준수익률에 국고채권 50년물 추가(별지 44호)

\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

## 나.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(2016/10/24개정·시행)

### 1) 목적

- 장기간 업무 미수행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문성 강화 교육(규정 5-16조, '16.10.24 시행)의 과목, 실시시간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전문인력(투자권유대행인) 업무별로 총 4종의 교육을 운영

#### 전문인력(투자권유대행인)별 전문성 강화 교육

전문인력(투자권유대행인)	전문성 강화 교육
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(펀드투자권유대행인)	펀드 전문성 강화 교육
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(증권투자권유대행인)	증권 전문성 강화 교육
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	파생상품 전문성 강화 교육
투자자산운용사	운용·분석·평가 전문성 강화 교육
금융투자분석사	
신용평가전문인력	

- 교육 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하며, 과목은 전문인력 실무·관련 법규·직무윤리 등으로 교육 목적에 맞게 구성

#### 교육 과목

1. 금융투자전문인력 업무 관련 실무
2. 관련법규 및 직무윤리
3. 분쟁의 예방과 조정
4. 금융투자상품등 평가·분석
5. 고객관리와 재무설계
6. 기타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금융·경제 지식



- 자격시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금융투자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에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를 규정한 10조 및 신청양식(별지 1) 삭제

**다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(2016/10/24개정·2016/10/31시행)**

**1) 목적**

-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재를 받은 자의 준법교육 고취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(규정 2-81조4항, '16.10.31시행)의 과목, 실시시간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

**2) 주요 내용**

- 교육은 10시간 이상의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고 과목은 불공정거래, 직무윤리 등으로 구성
  - 수료기준은 진도율 100% 임

**교육 과목**

1. 공통행위 준칙
2. 직무윤리
3. 판매 프로세스 절차 및 준수사항
4.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
5. 불공정거래
6. 위탁매매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
7. 분쟁조정 및 예방
8. 기타 준법교육에 필요한 사항

**라. 신용거래약관 일부개정(2016/10/25개정·2016/11/1시행)**

**1) 목적**

-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 시 주식처분순서에 대한 결정권이 고객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신용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위함



- 신용거래약관에는 신용거래로 매수한 복수 종목에 대해 회사가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에 ① 복수 종목에 대한 처분순서와 ② 고객이 그 주식처분순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음
  - 신용거래 시 고객이 회사의 추가담보요청을 받고도 요청받은 시한 내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주식을 필요한 만큼 처분하여 상환에 사용함

## 2) 주요 내용

### □ 임의상환을 위한 처분 시 주식처분순서 약관 명시(10조5항)

- (기존)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 시 그 순서가 약관에 적혀있지 않아 복수종목 처분의 경우 고객이 처분순서를 알지 못함
- (개정)약관에 주식처분순서를 예시를 들어 자세히 기재

### □ 고객이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약관 명시(10조6항)

- (기존) 주식처분순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약관에 분명하게 적혀있지 않아 고객이 주식처분순서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음
- (개정) 고객요청 시 주식처분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를 회사가 반영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변경요구 마감시한을 약관에 분명히 적도록 함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